

신노후생활연금신탁 국공채형 제()호 약관(구 하나은행) 개정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제4조(거래장소)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(이하 "개설점"이라 함)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,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·컴퓨터·전화기 등(이하 "전산통신기기"라 함)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4조(거래장소)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(이하 "개설점"이라 함)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<u>은행이 사전에 안내한</u> 다른 영업점,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·컴퓨터·전화기 등(이하 "전산통신기기"라 함)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.</p>	문구 추가
<p>제10조(신탁재산의 표시)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·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10조(신탁재산의 표시) <u>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합니다</u></p>	문구수정
<p>제15조(판매금액 및 판매기간)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 다만, 수익자보호 및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.</p>	<p>제15조(판매금액 및 판매기간)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 <u>다만,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당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이 설정되는 경우 은행은 제한 내용을 지체 없이서면 등 사전에 거래처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고,</u></p>	문구 수정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제24조(조세 및 비용) 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.</p> <p>제25조(수수료)</p> <p>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생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제31조(사고·변경사항의 신고)</p>	<p><u>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</u></p> <p>제24조(조세 및 비용) ① <u>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</u>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.</p> <p>제25조(수수료)</p> <p>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<u>사전에 안내한</u>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<u>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</u>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제31조(사고·변경사항의 신고)</p>	<p>문구추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① 거래처는 증서·거래인감 등을 분실·도난·훼손했을 때는 서면신고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이때는 다음 영업일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거래처가 인감(또는 서명)·비밀번호·성명·상호·대표자·대리인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서면으로 해야 합니다</p> <p>제36조(통지방법)</p> <p>①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</p>	<p>① 거래처는 증서·거래인감 등을 분실·도난·훼손했을 때는 <u>지체없이</u>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거래처가 인감(또는 서명)·비밀번호·성명·상호·대표자·대리인·<u>주소·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</u>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때는 <u>지체없이 은행에</u>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<삭 제></p> <p>제36조(통지방법)</p> <p>①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<u>사전</u></p>	<p>단서 삭제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통지합니다</p> <p>②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③<신 설></p> <p>제37조(신탁금의 시효)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제38조(약관의 변경등)</p>	<p><u>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</u></p> <p>②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<u>은행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③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<u>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없이 거래처가 제31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<u>삭 제></u></p> <p>제37조(약관의 변경 등)</p>	<p>조항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개월동안 게시하고 이 기간이내에 거래처가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</p> <p><신설></p>	<p>①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	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 data-bbox="206 306 385 338">,신 설></p> <p data-bbox="206 600 394 632"><신 설></p> <p data-bbox="206 820 394 852"><신 설></p> <p data-bbox="206 1190 913 1324">②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령이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	<p data-bbox="949 306 1644 593">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거래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 data-bbox="949 612 1644 804">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 data-bbox="949 820 1644 1161">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 data-bbox="949 1181 1137 1212"><삭 제></p>	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제39조(면책)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(또는 서명)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·위조·변조,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②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,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	<p>제38조(면책)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(또는 서명)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·위조·변조,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<u>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</u>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②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,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u>다만,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계좌번호,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</u></p>	<p>조항변경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제40조(관계법령 등의 준용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신탁업감독규정 및 은행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.</p> <p>제41조(관할법원) 은행,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42조(공시) ①,② (생략) ③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사항은 당행의 인터넷사이트(www.hanabank.com)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</p>	<p><u>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39조(관계법령 등의 준용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<u>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40조(관할법원) 은행,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<u>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</p> <p>제41조(공시) ①,② (좌동) ③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사항은 당행의 인터넷사이트(www.kebhana.com>고객센터> 상품공시실>신탁상품>신탁기준가 조회)을 통하</p>	<p>조항변경</p> <p>조항변경</p> <p>조항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	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	